

도로점용허가 취소 안내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4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 제 목 : 도로점용허가 취소 안내
- 처분근거 : 도로법 제7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 공고기간 : 2023.03.15. ~ 2023.03.29. (15일간)
- 공고내역 : 도로점용허가 취소 안내 관련 문서 참조
- 안내
 - 문의전화 : 의견제출 문의(도로안전운영과 061-740-1040)
 - 주소 : 전남 순천시 지현길 92, (FAX : 061-744-5761) 끝.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수신 고은영 귀하 (우62463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413 (고룡동))

(경유)

제목 도로점용허가 취소 사전통지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국도27호선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 295-3 외 5필지내 버섯재배시설 진출입로 설치 관련하여 「도로법」 제63조1항1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72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도로점용(연결)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미 착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도로점용공사 미 착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도로법」 제63조1항2호(도로점용허가 취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부서명	도로안전 운영과	담당자	양복만
		주소	전남 순천시 지현길 92			전화번호	061-740-1040
		전자우편 주소	qhraks70@korea.kr			팩스번호	061-744-5761
	제출기한	2024년 03월 29일까지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으면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서제출서 서식 1부. 끝.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공무직	양복만	주무관	전현호	도로안전운영 전결 2024. 3. 13.
				과장 김대겸
협조자				
시행	도로안전운영과-1094	(2024.03.13)	접수	
우	57997	전라남도 순천시 지현길 9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http://www.molit.go.kr/iroom
전화번호	061-740-1040	팩스번호	061-744-5761	/ qhraks70@molit.go.kr / 비공개(5)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